

(참조)

忠清北道教育監 표창조례중 개정 條例案

1. 改正事由
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(제4347호, 91. 3. 8) 시행으로 종전의 각 시·군 교육청표창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산하교육청등 각급교육행정기관에서 同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規定한 표창에 관한 각종 事項을 정하고,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개편(대통령령 제13451호., '91. 8. 16)에 따른 補助機關의 名稱을 변경하기 위해 條例를 改正함.

2. 主要骨子

- 가. 계명을 "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"로 함.
- 나. 표창권자를 "教育監"에서 "각 기관장"으로 변경하므로써 표창권자를 확대함.
- 다. 표창추천권자에 도 本廳의 각 담당관을 추가함.
- 라. 표창 및 표창추천 대상자를 審査·決定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여 두는 각 機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運籌에 관한 事項을 명시함.

3. 根據法令

- 가.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(1991. 3. 8., 제4347호)
- 나.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(1991. 8. 16., 대통령령 제13451호)
- 다. 정부표창규정(1984. 12. 13., 대통령령 제11559호)

5. 參考事項
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